적격 투자자와 기관투자자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정의

리테일 운용사와 A/I 운용사의 구분은 증권선물법(Securities and Futures Act, SFA) section 4A에 정의된 투자자 유형에 근거합니다. 제E편 제I장에서 이 정의와 그 연혁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이 장의 목적상으로는 주요 요소만으로 충분합니다. 개인은 순 개인자산이 200만 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이 중 주거용 주택의 순가치는 최대 100만 싱가포르달러까지만 산입), 순 금융자산이 100만 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직전 12개월간 소득이 30만 싱가포르달러 이상인 경우 적격 투자자(accredited investor)에 해당합니다. 법인은 순자산이 1,000만 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면 적격 투자자가 됩니다.[1] 기관투자자는 주로 은행, 보험회사, 라이선스를 받은 중개업자, 연기금, 정부기관 및 법에 열거된 기타 전문 거래상대방입니다.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자산운용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른 기관에 보유된 금융자산도 회사가 이를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부채에는 포트폴리오에 자금을 공급하는 마진 계좌와 신용한도가 포함됩니다.[2] 회사는 어떤 면제에 의존하기 전에 고객이 법정 정의를 충족하는지 확인할 책임을 계속 부담합니다.

옵트인 제도

2018년과 2019년에 시행된 개혁 이후에는 재산만으로 고객이 적격 투자자가 되지 않습니다. 고객은 별도로 옵트인해야 합니다. 2018년 10월 8일 공포된 증권선물(투자자 유형) 규정 2018(Securities and Futures (Classes of Investors) Regulations 2018)은 2019년 1월 8일부터 옵트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업계의 요청에 따라 MAS는 경과기간을 3개월 연장했습니다. 금융기관은 2019년 4월 7일까지 기존 고객에게 옵트아웃할 기회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2019년 4월 8일부터 온보딩된 신규 고객은 명시적으로 옵트인해야 했습니다. 옵트아웃하지 않은 기존 고객은 2020년 7월 8일까지 적격 투자자로 취급될 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들에게도 옵트인이 필요했습니다.[3] 재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옵트인하지 않은 개인은 리테일 고객으로 남으며, A/I 운용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프라이빗 뱅크나 외부 자산운용사는 각 고객에 대해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준 충족에 관한 증빙과, 위 규정 regulation 3(3)에 따라 적격 투자자로 취급되는 데 대한 고객의 동의입니다. 회사는 또한 고객이 계속 기준을 충족하는지 모니터링하고 계좌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4] 따라서 시장이 급락하면 재산이 기준선 가까이에 있던 고객의 지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운용사에게 지위가 갖는 의미

고객의 지위는 운용사의 라이선스 범주를 결정합니다. A/I 운용사는 적격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좁은 예외로서, 포트폴리오 운용, 리서치 또는 매매에 종사하는 직원, 즉 자사의 투자 전문인력이 적격 투자자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이들은 리테일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보호장치를 누리지 못한다는 점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5]

이 예외가 투자상품 모집에 관한 규칙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직원에게 자사 펀드를 모집하는 A/I 운용사는 여전히 투자설명서 요건의 면제에 의존해야 합니다. MAS에 따르면 여기에는 section 302B에 따른 12개월간 500만 싱가포르달러 이하의 소액 모집 면제, section 302C에 따른 12개월간 50명 이하에 대한 사모 면제, 그리고 section 305에 따른 제한적 집합투자기구(restricted schemes) 제도가 포함됩니다.[6] 이러한 상호작용은 싱가포르 제도의 일반적 특징을 보여 줍니다. 라이선스 규칙은 누가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지를 규율하고, 모집 규칙은 펀드를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는지를 규율합니다. 운용사는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벼운 규칙, 실질적인 의무

적격 투자자와 기관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면 규제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음 절에서 보듯이, A/I 운용사는 리테일 운용사보다 적은 자본과 적은 인력이 필요하며, 운용자산이 10억 싱가포르달러 미만이면 더 간소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적 보관, 독립적 평가, 연례 감사, 공시, 이해상충 관리 및 자금세탁 방지 통제라는 핵심 의무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이 정책은 부유층 투자자와 전문투자자가 위험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전제에 서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도 횡령, 잘못된 가격 산정 또는 숨겨진 이해상충으로 인한 손실로부터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제E편 제I장은 리먼 미니본드 사태를 상기시키는데, 이 사태는 복잡한 상품이 이를 판단할 수 없는 투자자에게 도달할 때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주

1. Securities and Futures Act 2001, s. 4A(1)(a)(i)(A)–(C): 순 개인자산 200만 싱가포르달러 초과, 금융자산(관련 부채 차감 후) 100만 싱가포르달러 초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과, 직전 12개월 소득 30만 싱가포르달러 이상; s. 4A(1)(a)(ii): 순자산 1,000만 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는 법인; s. 4A(1A): 주거용 주택은 담보부 신용공여를 차감한 가치로 산입하되 100만 싱가포르달러를 상한으로 함; 공식 출처에 근거하여 lawplayer.com에 편집된 법문, 2026년 8월 2일 동기화. ↩

2.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FAQs on the Definition of Accredited Investor and Opt-In Process* (2019), Q1–Q2: 금융기관이 합리적인 확인을 거친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보유된 자산도 포함할 수 있음; "related liabilities"에는 마진 계좌 및 투자 포트폴리오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받은 신용한도가 포함됨. ↩

3.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FAQs on the Definition of Accredited Investor and Opt-In Process* (2019), Q4: 규정은 2018년 10월 8일 공포되었고 2019년 1월 8일 시행됨; 금융기관은 2019년 4월 7일까지 기존 고객에게 옵트아웃 기회를 제공해야 함; "There will be no further extension after 7 April 2019"(2019년 4월 7일 이후에는 추가 연장이 없음); Q8: 명시적 옵트인은 2019년 4월 8일부터 온보딩된 적격 투자자 고객에게만 필요함; Q11–Q12: 옵트아웃하지 않은 기존 고객은 2020년 7월 8일까지 적격 투자자로 취급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옵트인이 필요함. ↩

4.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FAQs on the Definition of Accredited Investor and Opt-In Process* (2019), Q5: 적격 투자자에게 서비스하는 금융기관은 "are expected to monitor if an investor continues to meet AI thresholds and to have processes in place for periodic account reviews"; Q9–Q10: 규정 regulation 3(3)에 따른 고객의 동의에 관하여. ↩

5. MAS Guidelines SFA 04-G05, paras 2.2.2–2.2.3 및 각주 1: "investment professionals"는 포트폴리오 운용, 리서치 또는 매매를 수행하는 자임; 보호장치에는 기록 보존, 자발적 참여, 그리고 투자자가 "would not be accorded the regulatory safeguards as a retail investor"라는 서면 확인이 포함됨.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6. MAS, *FAQs on the Licensing of Fund Management Companies*, 최종 개정 2026년 6월, Q16: A/I 펀드운용회사는 section 302B(12개월 기간 내 500만 달러 이하의 소액 모집), section 302C(12개월 기간 내 50명 이하에 대한 사모) 또는 제한적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section 305의 적용 제외 규정에 의존할 수 있음.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